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동관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담당자 : 인사팀, 정재훈

TEL : 02-3774-6704

FAX : 0505-085-6704

문서번호 : 인사팀2020-361

2020.04.02

수 신 : 금융감독원

참 조 :

제 목 : 임원 선해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등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의 임원 선해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 첨부 : 1. 임원 선해임 내용 및 현황  
 2. 임원 선임 심사표  
 3. 임원 자격 확인서

※ 첨부 임원 선임 심사표, 임원 자격 확인서 인감날인 진행

※ 기타 필요서류 추가 제출 예정(임원 자격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끝.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현 만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및 현황 (변동 후)

1. 임원 선임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선임일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임무범위	주요경력	감직사항	자격요건 확인결과
수석부회장 (상근, 동거)	최현만 (崔現滿)	610818	2020.03.25 (2016.11.04) [4회]	2021.03 [정기 주총일]	대표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Ltd. BOD(東) (2017.03 - 현재) 미래에셋엔서투자 기탁비상부이사 (2018.03 - 현재)	적격
부회장 (상근, 동거)	조용기 (曹容基)	640212	2020.03.25 (2002.11.01) [18회]	2021.03 [정기 주총일]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 리테일 사업부 사장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現)		적격
사장 (상근, 동거)	김삼태 (金三泰)	650210	2020.03.25 (2014.01.08) [7회]	2021.03 [정기 주총일]	사외이사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총괄 상무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18부문대표 미래에셋대우 18총괄(現)		적격
사외이사 (비상근, 동거)	정요선 (丁祐善)	540516	2020.03.25 (2019.05.08) [2회]	2021.03 [정기 주총일]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증권사정년당 부원장보 업무인민 화우 교원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한국근초협회 회장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한국근초협회 고문(비상근) 금융감독회학 사외이사	적격
사외이사 (비상근, 동거)	조성일 (趙成一)	541213	2020.03.25 (2019.05.08) [2회]	2021.03 [정기 주총일]	사외이사	한림대 경영학부 부교수 키움증권 사외이사 DGB자산운용 사외이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외이사 평타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앙대 행정부총장	적격
사외이사 (비상근, 동거)	조문재 (趙文在)	520222	2020.03.25 (2020.03.25) [1회]	2022.03 [정기 주총일]	사외이사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새 영국대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객원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찰 미국대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적격
사외이사 (비상근, 동거)	이철마	740404	2020.03.25 (2020.03.25) [1회]	2022.03 [정기 주총일]	사외이사	미국 드폴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빙교수 미국 시몬슨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경희대 국제대학 국제학과 부교수	적격
사외이사 (비상근, 동거)	김성권 (金成權)	620222	2020.03.25 (2020.03.25) [1회]	2022.03 [정기 주총일]	사외이사	㈜중근담 선임연구소장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중근담 효용연구소장 / 선임연구소장 및 사외이사	적격

## 2. 임원 해임(사임)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해(사)임일	사유	비고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황건호 (黃健豪)	510123	2020.03.25 (정기주총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김병일 (金炳日)	550922	2020.03.25 (정기주총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3. 임원 현황 (변동 후)

직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주요경력	겸직사항	비고
수석부회장 (상근, 등기)	최현만 (崔現滿)	610818	2020.03.25 (2016.11.04) [4회]	2021.03 [정기 주총일]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Ltd. BOD(兼) (2017.03 ~ 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 (2018.03 ~ 현재)	
부회장 (상근, 등기)	조용기 (趙容基)	640212	2020.03.25 (2002.11.01) [18회]	2021.03 [정기 주총일]	미래에셋증권 리테일 사업부 사장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現)		
사장 (상근, 등기)	김상태 (金相兌)	650210	2020.03.25 (2014.01.06) [7회]	2021.03 [정기 주총일]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총괄 상무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IB1부문대표 미래에셋대우 IB총괄(現)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장용선 (張用善)	540516	2020.03.25 (2019.05.08) [2회]	2021.03 [정기 주총일]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한정보 발무법인 최우 고문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코원코자산신탁 대표이사 한국리츠협회 회장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한국리츠협회 고문(비상근)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조성일 (趙成一)	541213	2020.03.25 (2019.05.08) [2회]	2021.03 [정기 주총일]	화원대 경영학부 부교수 키움증권 사외이사 DSB자산운용 사외이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외이사 멀티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앙대 행정부총장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조준재 (趙準在)	520222	2020.03.25 (2020.03.25) [1회]	2022.03 [정기 주총일]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원 영국대사 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객원연구원 한영미래포럼 회장 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 미국대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이경미	740404	2020.03.25 (2020.03.25) [1회]	2022.03 [정기 주총일]	미국 드루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빙교수 미국 시몬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경희대 국제대학 국제학과 부교수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김성곤 (金成坤)	620222	2020.03.25 (2020.03.25) [1회]	2022.03 [정기 주총일]	(사)증권당 신학연구소장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現)	(사)증권당 효용연구소장 / 신학연구소장 및 사내이사	
사장 (상근, 미등기)	미덕림 (裊得琳)	620114	2020.01.01 (2009.03.13) [1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Wholesale사업부문대표 미래에셋대우 WM사업담당 미래에셋대우 Trading총괄(現)		
사장 (상근, 미등기)	이상걸 (李相杰)	611202	2020.01.01 (2020.01.01) [1회]	2020.12.31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미래에셋벤처투자 감사 미래에셋대우 WM총괄(現)		
사장 (상근, 미등기)	김재식 (金在植)	680220	2020.01.01 (2019.02.21) [2회]	2020.12.31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現)		
사장 (상근, 미등기)	이만열 (李滿烈)	640405	2020.01.01 (2015.01.01) [6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기업RM2부문대표 미래에셋대우 CRO 미래에셋대우 Global부문대표(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Ltd. BOD (2017.12 ~ 현재) Mirae Asset Securities (UK) Ltd. BOD (2018.01 ~ 현재) Mirae Asset Securities Holdings (USA) Inc. BOD (2018.03 ~ 현재)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BOD (2018.03 ~ 현재) Mirae Asset Securities (USA) Inc. BOD (2018.01 ~ 현재)	
부사장 (상근, 미등기)	민경부 (民景富)	611206	2019.12.01 (2008.03.13) [1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연금영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WM전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WM부문대표 미래에셋대우 WM총괄 미래에셋대우 경영지원부문대표(現)		
부사장 (상근, 미등기)	남기원 (南基元)	620815	2019.12.01 (2009.12.22) [1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금융상품영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유틸리티추진본부장 미래에셋대우 Wholesale부문대표 미래에셋대우 법인솔루션부문대표(現)		
부사장 (상근, 미등기)	봉원석 (奉源奭)	651204	2020.01.01 (2006.01.02) [15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기업 RM부문 2본부장 미래에셋증권 CRO 미래에셋대우 IB2부문대표(現)	디에스파워 주(주) 비상근이사 (2018.03~현재) (주)서대구에너지, 서대구출당스 비상근이사 (2018.03 ~ 현재)	
부사장 (상근, 미등기)	최훈 (崔勳)	650627	2020.01.01 (2018.04.01) [5회]	2020.12.31	하나금융투자 투자금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투자금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IB3부문대표(現)		
부사장 (상근, 미등기)	김성라 (金成瑒)	690522	2020.01.01 (2019.01.01) [2회]	2020.12.31 (2021.12.31)	한국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 미래에셋대우 Trading1부문대표(現)		
부사장 (상근, 미등기)	강길환 (姜吉煥)	650703	2019.12.01 (2017.12.01) [3회]	2021.12.31 (2021.12.31)	미래에셋증권 WM부문 담당 미래에셋권실팀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미래에셋대우 운영감시부문대표(現) [운영감시인]		
부사장 (상근, 미등기)	김영훈 (金映勳)	620615	2020.01.01 (2017.03.31) [4회]	2020.12.31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대표이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담당(現)	미래에셋펀드서비스 기타비상무이사 (2018.03 ~ 현재)	

직위 (상근 및 등기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주요경력	겸직사항	비고
부사장 (상근, 미등기)	최신호 (崔新浩)	691206	2020.01.01 (2014.12.22) [7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금융상품법인영업2부장 미레이셋대우 전략기획본부장 미레이셋대우 경영지원본부대표 미레이셋대우 혁신추진단(現)		
부사장 (상근, 미등기)	설경석 (薛敬錫)	640425	2020.01.01 (2017.09.01) [4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변화관리추진단 미레이셋생명 평가수상소 영업부문대표 미레이셋대우 초자연사무소장(現)	Mirae Asset Securities (Vietnam) LLC BOD (2018.01 - 현재) Mirae Asset Prevoir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Member (2018.05 - 현재) VINA-MAPS Consulting Vietnam LLC Chairman of MC (2019.05 - 현재) Vina Digital Finance Platform Company Limited Chairman (2019.07 - 현재)	
전무 (상근, 미등기)	안종근 (安宗根)	691007	2019.12.01 (2007.05.30) [13회]	2021.12.31 (2021.12.31)	미레이셋증권 프로젝트금융2본부장 미레이셋대우 투자심사본부장 미레이셋대우 CFO 미레이셋대우 리스크관리부문대표(現) [CFO / 위험관리책임자]	미레이셋캐피탈 기타비상무이사 (2019.03 - 현재)	
전무 (상근, 미등기)	강성범 (姜成範)	680916	2020.01.01 (2014.12.22) [6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기업금융본부장 미레이셋대우 경영혁신부문대표 미레이셋대우 IB1부문대표(現)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기타비상무이사 (2015.03 - 현재) ※ 투자회사 관리 중	
전무 (상근, 미등기)	홍경진 (洪景鎭)	660228	2020.01.01 (2013.01.21) [8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상품홍보영업부장 미레이셋대우 Passive솔루션본부장 미레이셋대우 PBS본부장(現)		
전무 (상근, 미등기)	유상현 (柳尙顯)	670502	2020.01.01 (2018.01.22) [3회]	2020.12.31	김영장 법률사무소 겸용된 전문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외채세실장 미레이셋대우 PE본부장(現)	롯데인탈라 비상근이사 (2018.03 - 현재) Hansol Denmark ApS 및 그 자회사 비상근이사 (2018.03 - 현재) Mirae Asset Daewoo Global I, LLC Director (중흥토스 비상근이사 (2019.01 - 현재)	
전무 (상근, 미등기)	김대환 (金大煥)	650323	2019.11.25 (2005.10.26) [16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경영혁신부문대표 미레이셋대우 WM,업권지원부문대표 미레이셋대우 강남1지역본부장(現)		
전무 (상근, 미등기)	이종원 (李鍾元)	631204	2020.01.01 (2005.04.01) [17회]	2020.12.31	미레이셋증권 Wholesale부문대표 미레이셋대우 WWC1센터장 미레이셋대우 판교지역본부장 미레이셋대우 투자전략및WM투자센터장(現)		
전무 (상근, 미등기)	전경남 (全庚南)	681028	2020.01.01 (2009.11.02) [11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파생솔루션본부장 미레이셋대우 Trading1부문대표 미레이셋대우 경영혁신부문대표(現) [혁신추진단장 兼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전무 (상근, 미등기)	윤성범 (尹成範)	661220	2020.01.01 (2006.07.10) [15회]	2020.12.31	미레이셋증권 감사실장 미레이셋증권 모바일 6i본부장 미레이셋대우 IT부문대표(現)		
전무 (상근, 미등기)	이두복 (李斗福)	690620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채권운용부장 미레이셋대우 Global채권운용본부장 미레이셋대우 Trading2부문대표(現)		
전무 (상근, 미등기)	박성진 (朴成鎭)	680708	2020.01.01 (2016.02.01) [5회]	2020.12.31	메리츠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미레이셋대우 고유자산운용본부장 미레이셋대우 대체투자본부장(現)		
전무 (상근, 미등기)	이택준 (李宅俊)	670113	2020.01.01 (2018.05.23) [3회]	2020.12.31	하나금융투자 포트폴리오금융팀 미레이셋대우 M&A본부소속 미레이셋대우 M&A본부장(現)		
전무 (상근, 미등기)	김승현 (金承顯)	660129	2020.01.01 (2016.12.30) [5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부산지역본부장 미레이셋대우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미레이셋대우 경남Hub지역본부장 미레이셋대우 WM영업부문대표(現)		
전무 (상근, 미등기)	한원동 (韓元東)	650725	2020.01.01 (2011.01.01) [10회]	2020.12.31	미레이셋증권 프로젝트금융1본부장 미레이셋대우 혁신추진단 담당 미레이셋대우 초자연사무소 담당(現)	Mirae Asset Securities (Vietnam) LLC BOD (2018.01 - 현재) MAPS Location (Singapore) Pte. Ltd Director (2018.09 - 현재) Mirae Asset Capital Vietnam Company Limited Chairman (2018.02 - 현재) VINA-MAPS Consulting Vietnam LLC Member (2018.02 - 현재)	
상무 (상근, 미등기)	김희주 (金熙柱)	660615	2020.01.01 (2016.04.25) [5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상품개발운용본부장 미레이셋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 미레이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現)		
상무 (상근, 미등기)	추인호 (秋仁昊)	680714	2020.01.01 (2013.01.15) [8회]	2020.12.31	미레이셋증권 법인영업본부장 미레이셋대우 EquitySales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김승희 (金勝喜)	631213	2020.01.01 (2009.10.01) [13회]	2020.12.31	미레이셋대우 멀티솔루션1본부장 미레이셋대우 Passive솔루션본부장 미레이셋대우 멀티솔루션2본부장 미레이셋대우 법인M&A본부소속 담당 미레이셋대우 대차WM(現)		

직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일의 6자리)	생일 (최초생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주요경력	검직사항	비고
상무 (상근, 미등기)	기승준 (基承俊)	681210	2020.01.01 (2011.12.14) [9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1본부장 미래에셋대우 ECM본부장 미래에셋대우 IPO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공모리츠금융담당(現)	미래에셋제3호기업인수목적회사 기타비상무이사 (2015.03 - 현재)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회사 기타비상무이사 (2018.10 - 현재)	
상무 (상근, 미등기)	김찬일 (金贊日)	680122	2020.01.01 (2013.12.01) [7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프로젝트금융2본부 PF1담당 미래에셋대우 PF3본부장 미래에셋대우 PF2본부장(現)	세종미래산업단지(주) 비상임 사내이사 (2018.04 - 현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드림아일랜드레저 비상근이사 (2019.03 - 현재) 이원디아이피티너스 기타비상무이사 (2018.06 - 현재) 인원원레저 기타비상무이사 (2018.06 - 현재)	
상무 (상근, 미등기)	주용국 (朱龍國)	710618	2020.01.01 (2017.07.07)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PF2본부 PF1담당 미래에셋대우 PF2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투자개발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양원규 (梁元圭)	730925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AI부장 미래에셋대우 AI본부장 미래에셋대우 GlobalAI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김현석 (金顯錫)	670202	2020.01.01 (2011.03.02) [10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전략트레이딩본부장 미래에셋증권 교육자산운용본부장 미래에셋대우 SF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한민욱 (韓民昱)	720919	2020.01.01 (2018.01.02) [3회]	2020.12.31	삼성물산 신사업지원팀 농협중앙회 인프라금융팀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투자금융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박승배 (朴勝培)	640924	2020.01.01 (2019.02.07) [2회]	2020.12.31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투자금융2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강나영 (姜羅英)	741102	2019.12.01 (2019.05.02) [2회]	2020.05.01	도이치증권 전략투자그룹 한국출판 /리빙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 SocialSituation본부소속 담당 미래에셋대우 SocialSituation담당(現)		
상무 (상근, 미등기)	전성훈 (全成勳)	710110	2019.08.26 (2019.08.26) [1회]	2020.08.25	KCC장부통신 개발팀 Unitys 금융개발팀 Citibank 글로벌마켓 수석 Barclays 글로벌마켓 수석 HSBC 글로벌마켓 수석본부장 미래에셋대우 GlobalMacro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이남근 (李南根)	691015	2020.01.01 (2010.04.23) [1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연금부문의대표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연금RM본부장 / 연금RM센터장 미래에셋대우 법인RM센터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김윤규 (金允圭)	650315	2020.01.01 (2013.12.30) [8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개인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장 미래에셋대우 WM컨설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솔루션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여의도)WM 투자센터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박주환 (朴柱煥)	640630	2020.01.01 (2011.12.14) [10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영업사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WM추진본부장 미래에셋대우 IWC1RM1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여의도)WM 지정장 미래에셋대우 분당WM 지정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박희재 (朴熙在)	670117	2019.12.01 (2006.11.27) [1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기업RM본부장 미래에셋대우 IWC RM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여의도)WM4담당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2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본부장 (現)		
상무 (상근, 미등기)	김남영 (金南榮)	680919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남인천지점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금융부문대표(現)		
상무 (상근, 미등기)	구종희 (具宗喜)	680815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멀티유선2본부장 미래에셋대우 멀티솔루션본부장 미래에셋대우 멀티유선1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김동순 (金東濬)	740419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PF3담당 미래에셋대우 PF1본부1담당 미래에셋대우 PF1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김미정 (金美貞)	700215	2020.01.01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투자금융1담당 미래에셋대우 투자금융1담당 미래에셋대우 투자금융1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전귀환 (全貴煥)	690505	2020.01.01 (2014.04.14) [7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채권영업담당 미래에셋증권 차관영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Global채권솔루션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배왕성 (裵王聖)	691015	2019.11.25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대진/산촌지점장 미래에셋대우 IWC대진센터장 미래에셋대우 충청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경북지역본부장(現)		
상무 (상근, 미등기)	박숙경 (朴淑京)	700317	2019.11.25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순천WM 지정장 미래에셋대우 호남충청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호남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호남충청지역본부장(現)		

직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일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주요경력	검치사항	비고
상무보 (상근, 미등기)	노홍우 (盧鴻雨)	680701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연금사업추진부장 미래에셋대우 정금추진단 미래에셋대우 경영혁신본부장(現)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수현 (金守顯)	700421	2020.01.01 (2017.08.01) [4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상생역지부장 미래에셋대우 감사실장 미래에셋대우 재무실장(現)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상무보 (상근, 미등기)	박신규 (朴信圭)	700202	2020.01.01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IWC지원팀장 미래에셋대우 IWC2RM4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커뮤니케이션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이영준 (李泳準)	700822	2020.01.01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대체투자자산팀장 미래에셋대우 투자자산본부장 미래에셋대우 대체투자자산본부장(現)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상무보 (상근, 미등기)	박경수 (朴景秀)	710501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Passive솔루션1팀장 미래에셋대우 Passive솔루션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박현주 (朴顯周)	710415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IB2부서장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2본부IB1팀장 미래에셋대우 종합금융3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종합금융1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이향락 (李香洛)	690626	2020.01.01 (2018.03.19) [3회]	2020.12.31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증권 미래에셋대우 PFG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연주 (金演周)	810520	2020.01.01 (2019.01.01) [2회]	2020.12.31 (2021.12.31)	한국투자증권 투자공학부 미래에셋대우 Equity핵심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채수환 (蔡秀煥)	670421	2019.11.25 (2013.12.01) [7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영업부/강남센터 자점장 미래에셋대우 강동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강서지역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남미옥 (南美玉)	680301	2019.11.25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목동중량WMM 지점장 미래에셋대우 강서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경인지역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박기관 (朴起觀)	640312	2019.11.25 (2016.01.11) [5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영남사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IWC부산센터장 미래에셋대우 부산강남지역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최준혁 (崔準赫)	661023	2019.12.16 (2016.12.30) [5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대구WMM 총괄지점장 미래에셋대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솔루션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고객솔루션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박건영 (朴健榮)	691022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장 미래에셋대우 상품솔루션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상품컨설팅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효식 (金孝植)	661125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분당지점장 미래에셋대우 연금지원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감사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이재웅 (李在熊)	700129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리스크정책실장 미래에셋대우 그룹위험관리팀장 미래에셋대우 그룹위험관리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구용욱 (具勇旭)	671127	2019.11.25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기업분석1부장 미래에셋대우 필수기반산업부장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미래에셋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 미래에셋대우 Sage솔루션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노정숙 (盧貞淑)	710129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강남구청지점장 미래에셋대우 강남구청WMM지점장 미래에셋대우 영유학실장 미래에셋대우 결제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성주완 (成周完)	720401	2019.12.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ECM부 미래에셋대우 IPO부서장 미래에셋대우 IPO1팀장 미래에셋대우 IPO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최준구 (崔準九)	710418	2019.12.01 (2017.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법무실장 미래에셋대우 IB연출지원단장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부대표 미래에셋대우 컴플라이언스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윤상화 (尹相華)	700905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영업추진팀장/리태일전혁팀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B2C본부장(現)		

직위 (상임 및 등기여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주요경력	검적사항	비고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호영 (金浩榮)	710920	2020.01.01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파생상품운용부장 미래에셋대우 Equity파생운용1담당 미래에셋대우 Equity파생운용부장 미래에셋대우 리스크관리본부장(現) (주요업무직할책임자)		
상무보 (상근, 미등기)	이강혁 (李康赫)	730420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법무실 부서장 미래에셋대우 법무실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현석 (金賢錫)	810117	2020.01.01 (2019.01.01) [2회]	2020.12.31	대신증권 파생상품2본부장 DB생명 자산운용팀 미래에셋대우 FICC파생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박재현 (朴在顯)	690531	2020.01.01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채권운용부 미래에셋대우 채권운용1 담당 미래에셋대우 채권상품운용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이재현 (李在顯)	721004	2020.01.01 (2019.01.21) [2회]	2020.12.31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해외채권운용팀장 미래에셋대우 런던현지법인 미래에셋대우 해외채권운용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황인일 (黃仁日)	661114	2019.11.25 (2019.08.20)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도덕적위험/대차중앙지침장 미래에셋대우 그랜드인더컨티넨탈 센터장 미래에셋대우 강남파이낸스센터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이노베이션팀장 미래에셋대우 강남2지역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기환 (金起煥)	680125	2019.12.16 (2018.12.26)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WPM강남파이낸스센터 등 미래에셋대우 컴상/대차WPM지침장 미래에셋대우 VIP솔루션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김성주 (金成周)	580510	2019.11.25 (2017.12.01) [3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투자정보지원부장 미래에셋대우 Prop.Trading1담당 미래에셋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고객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안성철 (安成澈)	720314	2019.12.01 (2019.12.01) [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중형금융구조화금융1담당 미래에셋대우 중형금융2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이지영 (李智榮)	710109	2019.12.15 (2019.12.16) [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세일즈트레이딩/국제영업팀 미래에셋대우 One-AsiaEquitySales팀장 미래에셋대우 GlobalMarket본부장(現)		
상무보 (상근, 미등기)	유승선 (柳勝善)	710901	2019.12.16 (2019.12.16) [1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Korea Research Center 센터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자산배분실장 미래에셋대우 주식운용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주식운용본부소속 미래에셋대우 초대청투자전략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이기상 (李基相)	720926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여의도영업부/은임홍지침장 미래에셋대우 WMS사업팀장/인사팀장 미래에셋대우 인재혁신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정유인 (鄭維仁)	681215	2019.12.16 (2014.05.11) [7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황신리역지침장 미래에셋증권 인재혁신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인재개발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이유주 (李有柱)	690911	2019.12.16 (2018.10.04) [3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해외/수원지침장 미래에셋대우 인사팀장 미래에셋대우 경영인프라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경영지원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김병규 (金炳圭)	720220	2020.01.01 (2018.07.16) [3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WPM기획팀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실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사업추진팀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실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혁신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한섭 (韓燮)	700301	2019.12.16 (2018.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입산/영통지침장 미래에셋대우 디지털R&D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고객케어본부장 미래에셋대우 WMS사업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박홍근 (朴洪根)	720726	2020.01.01 (2017.07.07) [5회]	2020.12.31	이베스트투자증권 알고리즘트레이딩 지음지식서비스 솔루션사업부 미래에셋대우 기술지원팀장 미래에셋대우 IT인프라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고객시스템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신성철 (申成澈)	711219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업무개발팀장 미래에셋증권 IT지원팀장 미래에셋대우 본사시스템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이동률 (李東率)	670903	2020.01.01 (2019.07.08)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고객시스템부 부서장 미래에셋대우 업무개발본부장 미래에셋대우 계획팀장 미래에셋대우 신사업TF장 미래에셋대우 업무혁신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정진욱 (鄭鎭旭)	640411	2020.01.01 (2016.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시스템운영부장 미래에셋대우 IT인프라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정보보호본부장(CISO)(現)		



직위 (상임 및 등기(미부))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신입일 (최초신입일)	임기 만료일 (계약 종료일)	주요경력	감독사항	비고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황병준 (黃炳準)	711118	2020.01.01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심사파트장 미래에셋대우 창업추진단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심사팀장 미래에셋대우 기업금융심사본부장(現) [주요업무감행책임자]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류원식 (柳元植)	710206	2019.05.03 (2018.12.26) [2회]	2020.05.02	한양증권 재정금융팀 미래에셋대우 Prop.Trading팀장 미래에셋대우 월터증권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김가영 (金嘉永)	691018	2019.12.16 (2018.12.01) [2회]	2020.12.31	미래에셋증권 장실지점장 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영업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연금기획팀장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서철수 (徐徹秀)	720914	2019.11.25 (2018.12.30) [4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운용전략담당 미래에셋대우 고객콜로봇자신비행본부장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전략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고재삼 (高在相)	711107	2019.11.25 (2019.11.25) [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울산지점장 미래에셋대우 서울신원지점장 미래에셋대우 대구경북지역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이승주 (李承柱)	681206	2019.12.16 (2018.12.16) [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지원부 미래에셋대우 금융상품인명영업부 미래에셋대우 월터솔루션1본부장(現) 미래에셋대우 월터솔루션2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권오만 (權五萬)	701117	2019.12.16 (2018.12.16) [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경영인프라본부장 미래에셋대우 분당AM지점장/투자전략팀장WM1담당 미래에셋대우 고객케어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김종국 (金宗國)	720707	2020.01.01 (2019.07.08)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시스템팀 미래에셋대우 시스템팀장 미래에셋대우 IT인프라본부장(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임병학 (梁秉學)	730629	2020.01.01 (2019.10.07) [2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Global혁신팀장 미래에셋대우 Global-IB시너지팀장 미래에셋대우 중합금융1본부구조화금융2팀장 미래에셋대우 Global시너지본부장 (現)		
이사대우 (상근, 미등기)	김정범 (金政範)	690220	2020.01.01 (2020.01.01) [1회]	2020.12.31	미래에셋대우 상품전략부서장 미래에셋대우 Wrap솔루션팀장 미래에셋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現)		


× 변경 내역 : 전성훈 (투자운용본부장 → GlobalMacro본부장), 진귀학 (재간영업본부장 → Global채권솔루션본부장)

× 상근 임원 현황은 본부장 이상 직책자를 기준으로 함 (단, 본부장 이상 직책이 아닌 경우에도 '상무'이상 직위자를 포함)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최현만	직위	수석부회장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최현만	직위	수석부회장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성명	최 현 만	직 위	수석부회장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 항목		심사 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u>종합 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최 현 만 (서명 또는 인)</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 현 만</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조 응 기	직 위	부회장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 · 경고 · 문책 · 직무정지 ·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용기	직위	부회장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 응 기	직 위	부회장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조 응 기 (서명 또는 인)</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 현 만 (서명 또는 인)</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김상태	직위	사장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성명	김상태	직위	사장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상태	직위	사장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3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미래에셋대우 사장 김상태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현만 (서명 또는 인)</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사외이사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간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p>		해당사항 없음			



람				
성명	정용선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III.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의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정용선 (서명)</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현만 (인)</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사외이사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성일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의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조성일 (서명 또는 인)</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현만 (서명 또는 인)</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조운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윤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윤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사외이사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성명	조윤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4) 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5) 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운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유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조윤제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의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조윤제 (서명 또는 인) </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현만 (인) </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이름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 인가 · 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 · 경고 · 문책 · 직무정지 ·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 · 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점마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점마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사외이사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점마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4)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5)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6)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점마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점마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성명	이젼마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의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이젼마 (서명) </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현만 (서명) </p>					

## 임원 선임 심사표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공통사항〉</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해당사항 없음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사외이사 해당사항〉</p> <p>I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p> <p>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p> <p>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p> <p>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금융회사와 다음의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해당 금융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해당사항 없음			
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나.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4)해당 금융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보험업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사원총회일을 말한다) 현재 해당 금융회사가 자본금(해당 금융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해당사항 없음			
5)해당 금융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6)해당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7)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해당사항 없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이 경우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본다.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가.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와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1)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 및 자은행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다. 나목 (1) 또는 (2)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해당사항 없음			
3)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 및 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4)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가.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나.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의 자회사등, 해당 은행의 자은행,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p>다.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 외의 다른 회사(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또는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p> <p>나. 그 밖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6)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p>		해당사항 없음			
<p>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p>		해당사항 없음			

성명	김성곤	직위	사외이사	직전근무처및직위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임직원		해당사항 없음			
Ⅲ.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인지 여부		해당			
<p><u>종합의견</u></p> <p>상기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의결격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20년 03월 25일</p> <p>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김 성 곤 (서명 또는 인)</p> <p>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최 현 만 (서명 또는 인)</p>					